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안 미 자 의원)

의 안 번 호	26-140

발의년월일 : 2026. 11. .

발 의 자 : 안미자, 김진천, 김해진, 백남환, 원성혜, 장덕준 장정희, 최영섭, 한송이

1. 개정이유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제1항)

3.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6. 11. 9 ~ 11.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비 지원) ①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20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 제6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김민정
연 락 처	02-3153-8312